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 정

제목 : 「지하철 전동차내 CCTV 운영」 관련 의견 표명

주 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하철 전동차내 CCTV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서울메트로 사장(이하 ‘서울메트로’라 한다)과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이하 ‘서울도시철도공사’라 한다)에게 아래와 같은 의견을 표명한다.

1.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각각 「CCTV설치 및 운영방침」 및 「5678 서울도시철도 CCTV 운영현황」에 지하철 전동차내 CCTV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반영하고 동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CCTV설치 및 운영방침」 및 「5678 서울도시철도 CCTV 운영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2. CCTV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기관사에 대한 교육과 기관사가 CCTV를 모니터링하는 경우 접속기록(모니터링 일시, 내역 등)의 보관 및 이의 확인·감독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예규에 규정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각각 「CCTV 설치 및 운영예규」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CCTV 설치 및 운영예규」에 기관사의 전동차내 CCTV 모니터링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의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관사는 지하철 전동차내 긴급상황(비상인터폰, 화재경보기 작동시 등)이 발생하여 이에 대처할 필요가 있거나, 승객의 생명·안전·재산의 보호 및 전동차의 안전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치·운영목적과 관계없이 CCTV를 상시 모니터링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유

I. 권고 배경

최근 범죄 및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공공·민간에서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설치가 급증함에 따라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등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예방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하철 전동차 CCTV 설치·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주문과 같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게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였다.

II. 권고 사유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범죄 및 화재예방 등 고객 안전을 위하여 지하철 전동차내 2호선 전체 834량 중 356량(43%)에 712대, 7호선 전체 496량(100%)에 992대의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기관실 모니터 화면은 승강장 영상이 비춰지는 기본화면에서 비상인터폰, 화재경보기 작동 등 긴급상황 발생시 전동차내 영상으로 자동 전환되고, 기관사는 전동차내 CCTV를 통해 임의적으로 객실내 상황의 모니터링도 가능하며 전동차내 CCTV에 의해 촬영된 영상은 자동으로 전동차내 운영 서버에 저장되고 있다.

전동차내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설치 목적, 설치대수, 위치, 촬영범위 등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조사결과,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각각 「CCTV설치 및

운영방침」(개정 2012.4.) 및 「5678 서울도시철도 CCTV 운영현황」(개정 2011.10.10.)을 개정 한 이후 동 방침에 지하철 전동차내 CCTV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을 위한 암호화 기술적용, 접속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조치 등의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동차내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기관사에 대한 교육 등의 관리적 보호조치와 기관사의 CCTV 모니터링 접속기록(모니터링 일시, 내역 등) 보관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 등 기관사가 CCTV 설치·운영의 목적을 벗어나 전동차내 상황을 모니터링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기관사의 전동차내 CCTV 모니터링 관련하여 전동차내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그러한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동차내 CCTV를 기관사가 모니터링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의 조작은 금지하고 있는 바, 비상인터폰, 화재 경보기 작동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승객의 생명·안전·재산의 보호 및

전동차의 안전운행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관사가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조작하지 아니하도록 기관사의 설치·운영목적외 모니터링 금지를 예규에 명문화하여 사후적 침해 위험성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전동차내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마련과 홈페이지 공개, 기관사의 전동차내 CCTV 모니터링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013. 1. 2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별지

관련규정 목록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 정보 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 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시행령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 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